

(붙임 2)

코스닥시장 특례상장 제도개선 주요내용

1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신설 [테슬라 요건]

-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
 - ① 현행 외형기반(매출/시총) 요건을 확대, 적자라도 매출이 증가하는 적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(시총 500억 & 직전 매출액 30억 &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%)
 - ②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,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업(시총 500억 & 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%)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
- ※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풋백옵션 부여(3개월, 공모가 90%)[세부내용은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”에 반영]

2 상장주선인(증권사)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 도입 [성장성 특례상장]

-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를 신설
 - ※ 풋백옵션 부여(6개월, 공모가 90%)[세부내용은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”에 반영], 상장주선인 추천 보고서(성장성보고서) 등

3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상장 확대 [기술성장기업 평가모델 디변화]

-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 외 사업성 항목* 등 새로운 평가모델을 추가(세칙 및 기준 개정)
 - ※ 시장매력도, 사업모델의 타당성·경쟁우위도, 사업경쟁력, 경영역량, 개발역량